



보험업법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 검토

김규동 연구위원

2017년 1월 25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험 직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이 있음. 보험회사가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보험가입 거절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일부 보험회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더라이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될 경우,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2017년 1월 25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에는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됨¹⁾

-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101조의2(차별금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계약자의 차별과 관련되는 것은 보험료 차이와 가입거절 여부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보험료는 보험계약 통계에 근거하여 산출하므로 부당한 차별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보험계약의 가입거절 문제는 2016년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당시 박선숙 의원이 지적한 일부 직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거절 내용과 관련이 있음

■ 보험가입 거절 논란은 민영보험이 점차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됨

- 과거 민영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사적 영역이고 보험계약 인수는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

1) 의안번호 5272

식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 보험계약을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 이는 민영보험이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실손보험과 같은 공적 보장을 보완하는 보험의 판매 확대와 생명보험·개인연금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민영보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사적·공적 영역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산출과 언더라이팅이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의 직업을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함

- 상해담보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하고 있으며, 질병담보는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음
- 일부 직업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가입거절 직업은 회사별로 상이하며 직무 수행 중 사고 노출이 많은 직업들이 대부분임
 - 그러나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으며, 일부 저위험 직업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정성적 판단과 보험계약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 공정한 차별(fair discrimination)은 보험료 산출 기본 원칙의 하나이며, 부과 가능한 보험료로 보장이 불가능할 만큼 위험도가 높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방침에 따라 특정 고위험 직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저위험 가입자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험도와 무관하게 모든 보험계약을 인수하되 (고위험보다는 낮고 저위험보다는 높은) 평균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위험별로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피보험자만 남는 death spiral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일부 고위험 직업 종사자를 가입 거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실제 위험도에 비해 보험료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보험회사는 고위험 직업 종사자의 상해담보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반영하여 저위험 직업 종사자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고위험 직업의 위험도가 전체 고위험 직업의 평

- 균 보험료보다도 높다고 판단하면 보험회사는 해당 직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게 됨
 - 생명·질병·상해보험 등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동인수제도는 없음
- 이처럼 보험회사의 인수거절은 합리적인 보험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일부개정 법률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통계적 근거 이외에 직업별 위험도의 정성적 판단 및 보험회사별 고유의 인수 지침에 근거하여 인수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 보험회사의 정성적 판단은 명확한 통계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예측하는 회사별 경험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보험회사의 정성적 판단이 계약자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언더라이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논란 및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든 계약을 인수할 경우,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일부 고위험 직업 종사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직업별 보험료 편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새로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민영보험의 역할이 커지면서 차별 금지를 위한 보험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보험 소비자들이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소비자들이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님
 - 따라서, 보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kiri**